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조사·수사결과 통보 시 감사원·수사기관에 징계처분 절차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조사·수사자료의 범위를 구체화(안 제8조의2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「군인사법」 제59조의3 제4항 전단에
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·수사 자료’의 범위를
구체화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감사원의 조사 자료: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, 혐의
자 · 관련자에 대한 감사보고서, 문답서, 확인서 및 그 밖에 국방부장관
또는 각군 참모총장(법 제64조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이 권한을 위임한
경우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)이 감사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
- 군검찰·군사법경찰의 수사 자료: 수사개시통보서, 범죄처분 결과통보
서, 공소장, 불기소 결정서, 송치 의견서, 혐의자·관련자에 대한 신문조
서, 진술조서, 진술서 및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(법
제64조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병대사령관을
포함한다)이 국방부검찰단장·국방부조사본부장, 그 밖의 군 수사기관
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
- 검찰 · 경찰,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: 수사개시통보서, 범죄처분
결과통보서, 공소장, 불기소 결정서, 송치 결정서, 불송치 결정서, 혐의
자에 대한 신문조서, 진술서 및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
장(법 제64조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병대사령

관을 포함한다)이 검찰총장·경찰청장,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감사원·수사기관의 조사·수사자료를 징계절차에 반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징계처분을 가능하게 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2.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통보 안내의무의 요건으로 「군인사법」 제59조 제8항의 징계처분 결과통보의무의 요건을 인용함(안 제22조3 제1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조문의 요건을 상위 법령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변경

나. 제·개정 내용

- 「군인 징계령」상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통보 안내의무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, 「군인사법」상 징계처분 결과통보의무의 요건을 인용하여 상호 일치시킴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법령의 체계정합성을 향상시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3. 군내 갑질행위의 행위태양을 구체화(안 제22조3제5항 신설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「군인사법」 제59조 제8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행위의 유형을 구체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(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)를 군내 갑질행위로 규정
- 영 제20조제2항제1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군내 갑질행위로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갑질행위 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